금속 커튼월(Curtain wall) 안전작업 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1편 제6 장 (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)의 규정에 의거 금속 커튼월 작업상의 안전지침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건설공사 중 "금속 커튼월 작업"에 적용한다.

3.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(가) "커튼월(Curtain wall)"이라 함은 공장에서 생산한 부재를 구조물의 외벽에 조립, 설치 하여 마감 처리하는 비내력 벽을 말한다.
- (나) "Mock-up test"라 함은 풍동시험을 근거로 설계한 실물모형을 만들어, 공사예정 지에서 커튼월의 변위측정, 온도변화에 따른 변형, 누수, 접합부 검사, 열손실 등을 공사 전에 최악의 외기조건하에서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.
- (다) "유니트(Unit)"라 함은 현장에서 설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의 크기로 공장에서 조립, 제작된 하나의 형태를 말한다.
- (라) "고정용 부착철물(Embedded plate)"이라 함은 커튼월을 고정하기 위해 구조물과 일체가 되도록 구조물에 매설하는 앵커철물을 말한다.
- (마) "긴결재(Fastener)"라 함은 커튼월의 본체와 구조체를 체결하는 부재로서 힘의 전달, 오차흡수, 변형흡수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한다.
- (바) "실란트(Sealant)"라 함은 거튼월 부재간의 접합부를 채우는 재료를 말한다.